

전주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2가단174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순장

변 론 종 결 2022. 7. 12.

판 결 선 고 2022. 8. 30.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주시 완산구 D ] 사이에 2021. 8.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2021. 8.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686110호 양수금 사건에서 2019. 11. 26. ‘C은 원고에게 13,157,78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2. 20.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C의 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1. 6. 16.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F, C, G, H는 2021. 8. 18.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21.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4. 11. 20. 이후 원고를 비롯한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신용대출 등 차용금 채무를 계속 연체하여 오고 있었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전혀 소유한 부동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원고는 C에 대한 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이는 사해행위취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가) 적용법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또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만 명의신탁에 따른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기여분이 그보다 더 있다거나 C의 구체적 상속분이 아래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더 감소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채무자인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11 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나. 당사자의 주장

## 1) 원고

C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 지분을 처분하였고, 이는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책임재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물반환 방식의 원상회복으로서 위 2/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피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하숙과 샅바느질을 하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구입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설령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망인과 24년간 같이 거주하며 그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분할협의를 C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한 정도로 미달하는 과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가 아니며, 나아가 피고는 C의 채무초과를 알 수 없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 다.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에게 명의신탁 된 피고 소유인지

#### 가) 적용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재산의 취득에 있어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다른 일방이 실제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되고, 그 대가를 부담한 다른 일방이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자에게 이를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2000. 12. 12. 선고 2000다45723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5884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른 증거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에는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632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망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시키기에 부족한 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한하여 피고가 망인에게 명의신탁 한 피고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다.

- (1) 망인이 소득활동을 한 것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하숙 등의 활동을 통해 가계의 수익을 일정 부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피고가 망인과 함께 재산을 증식하며 변동시켜 온 과정에서 피고의 유지 형성에 대한 기여를 엿볼 수 있다.
- (3) C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자녀들 역시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귀속하는 것에 동의하였는바, 이는 모자지간이라 하더라도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마련하는 데에 피고의 기여나 공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4)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와 망인의 혼인공동생활 중 형성한 재산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 이 사건에서, 망인의 소득활동이 이 사건 부동산 마련의 주된 출연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과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공동재산에 대한 망인의 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5) 통상 이혼 소송에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혼인기간 중 가사와 육아 등의 노력으로 그 유지 및 감소방지와 증식에 기여한 경우 이를 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이때 혼인기간이 오래 된 부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비율이 50%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 증가, 유지 및 감소방지 등의 기여를 한 재산을 공평한 청산의 이념에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6) 나아가 가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어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이때 채무자 또는 수익자가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입증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취소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것인바,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출곤 피고와 망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거지로 20년 이상 계속 사용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80세에 가까운 고령의 피고의 기여분을 반영하여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을 이 사건 부동산의 7/11 지분(= 기여분 1/2 지분 + 잔존 1/2 지분 × 법정상속분 3/11 지분) 정도로 파악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 2) 피고가 선의 수익자인지

피고는 C의 모친으로서 J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밀접하게 소통하는 가족이므로 C의 채무초과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추정되는 피고의 악의를 반복하여 선의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 1) 사해행위 취소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그

상속재산 중 C의 구체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인바, 피고는 위와 같이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취소되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1/11 지분(=상속재산인 1/2 지분 × C의 상속비율 2/1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식

별지